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4119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형욱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3. 14.

접수 제8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	대출금액	대출은행	보증기한 (변경기한)
1	2013. 5. 21.	297,000,000.	330,000,000.	D은행	2014. 5. 20. (2020. 5. 15.)
2	2013. 9. 10.	800,000,000.	1,000,000,000.	기업은행	2014. 9. 5. (2020. 8. 28.)
3	2013. 9. 10.	200,000,000.	250,000,000.	기업은행	2014. 9. 5. (2020. 8. 28.)
4	2016. 9. 1.	500,000,000.	625,000,000.	기업은행	2017. 8. 31. (2020. 8. 28.)
5	2018. 7. 25.	297,000,000.	330,000,000.	기업은행	2019. 7. 24. (2020. 8. 28.)
	합계	2,094,000,000	2,535,000,000		

나. 한편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8. D은행으로부터, 2019. 10. 30.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C의 회생신청에 따른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1. 29. D은행에 299,529,283원(원금

297,000,000원 + 이자 2529,283원)을, 2019. 12. 27. 기업은행에 1,825,042,223원(원금 1,796,936,047원 + 이자 28,106,17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B은 2019.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0. 20.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2010. 10. 22.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화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C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2019. 11. 7. 피고에게 2019. 11. 14.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미 근저당권계약체결 사실 및 이로 인하여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됨으로써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1. 19.에 제기된 본안소송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9. 10. 28. D은행으로부터 C의 회생신청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같은 달 30. 기업은행으로부터도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설정 경위 및 계약서, 거래처별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2019. 11. 14.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 협조요청 서면을 작성한 후 이를 다음날인 2019. 11. 7.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B과 피고 간 작성한 분할변제각서 등을 회신받았다.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조회하여 시세의 일반 평균가가 9억 7,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9. 11.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부결재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품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2,124,571,506원(= 299,529,283원 +

1,825,042,223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로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점, 원고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이나 구상권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상 사고처리된 기업 및 구상권 행사의 대상인 보증인에 대하여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점, 전문 보증기관인 원고로서는 그 당시 B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가처분 신청서에도 'B의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1. 4.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9. 11. 7.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바, 원고로서는 늦어도 피고에게 고지한 근저당권과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기한인 2019. 11. 14.에는 채무자인 B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사해의 의사도 그 때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 2019. 11. 14.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20. 11. 19.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전받은 D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척기간은 D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¹⁾ 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가 D은행에게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D은행의 대출금 채권 및 채권자취소권이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관련된 서류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을 무렵 이미 사해의 의사가 있음을 알고 있는 이상 이전 채권자인 은행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²⁾.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서지원, 판사 권가희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도로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면 적 : 131.40㎡

(대지권의 목적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15242.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27538.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33933.6㎡

대지권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76715.2분의 68.633

1) 2021. 7. 7.자 준비서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원고는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에 근거하여 양도인인 은행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은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르다.